

인민혁명당 사건을 통해서 본 인권의 문제

조현조

인혁당 사건은 1964년과 1974년 2회에 걸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조작됐다. 1964년에는 우동읍, 도예중, 양춘우, 강무갑 등 과거 혁신계, 언론계, 학생, 정당 인사 41명이 소위 인혁당을 구성해 한일회담 반대 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1974년에는 서도원, 이수병, 하재완, 송상진 등 23명이 '인혁당 재건위'를 구성해 학생들의 유신반대 시위를 배후조종했다는 명목으로, 장석구는 '인혁당 재건위 서울 지도부의 일원'인 이성재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구속됐다. 두 사건 모두 국민들의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해 당시 폭발적으로 분출되던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던 것이다. 또한 두 사건 모두 일체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중앙정보부에서 가혹한 고문을 통해 얻은 자백만으로 인혁당 구성과 공산주의 활동이라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다. 그러나 1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들이 기소를 포기하고 사표를 제출하면서 일부 피의자들에게만 반공법 위반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만들어진 '범죄' 내용이 재판정에서 모두 인정되어 24명 모두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으로 실형

을 선고받았고, 이중 8명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이처럼 10년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인혁당 사건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차이점 때문에 1974년의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한 사실 확인과 분석이 필요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고문에 의한 신체의 자유 박탈 이외에도 긴급조치권에 의한 인권 침해, 공판조서 조작을 포함한 불법 재판, 사법 살인에 의한 생명권 침해,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미행, 사회적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인권 침해의 다양한 양태들이 드러났는데, 이 글에서는 사건의 조작 과정에서 저질러진 인권 침해의 실상을 개략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 사건의 배경

1) 대통령 긴급조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가 국가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선포해¹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 피의자들은 모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과 관련됐다고 간주되어 구속됐고, 긴급조치 2호에 의해 구성된 비상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따라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긴급조치의 위법성, 반인권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긴급조치는 유신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유신 헌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² 따라

1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4호.

2 유신 헌법은 3공화국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마련, 의결됐다는 점에서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유신 헌법에 의하면, 국정감사권이 부인되고, 징계 처분에 의해서 법관이 파면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 추천권,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제안권, 모든 대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이나 연임 제한이 없고,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즉, 유신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권한을 손아귀에 쥐 채 죽을 때까지 권좌를 지킬 수 있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권력분립과 견제, 사법권의 독립, 민주적인 선거 제도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철저히 부정됐다.

서 긴급조치 역시 정당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유신 헌법 53조에서 규정된 긴급조치 관련 내용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우선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 선포 요건이 지극히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은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 제한하는 권한의 폭이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기만 하면 되고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해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긴급조치가 계속 될 수 있는 등 사후 통제의 수단이 전혀 없다.

셋째, 긴급조치 1호는 장준하, 백기완 등이 중심이 된 국민개헌청원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 1월 8일에 선포됐고,³ 4호는 반유신 학생 시위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 4월 3일에 선포됐다.⁴ 따라서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와는 무관하게 정권의 보위를 위해서 선포됐고, 그 이후 대량의 인신 구속과 불법 고문수사, 검사의 구형량에 맞춘 비상군

3 긴급조치 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긴급조치 4호. “1.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 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해 장소 물품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4. 이 조치 선포 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 내용의 전부를 수사 정보기관에 출석해 숨김없이 고지해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출석 고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8. 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9.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법회의의 형량 선고⁵등 갖은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

넷째, 긴급조치 1호와 4호의 내용은 유신 헌법에도 배치되는 반헌법적인 것이다. 이 조치들은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때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개정청원운동은 자유민주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고, 설사 이 청원운동이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능히 당시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시위 역시 집회시위법 등으로 능히 다스릴 수 있었으며, 진정으로 '민청학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형법 중 범죄단체 조직죄나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능히 다스릴 수 있었다. 따라서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유신 헌법에 명문화된 선포 조건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청원권과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이고, 긴급조치 4호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민청학련'을 범죄단체로 예단함으로써 국민의 결사의 자유와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이다. 또한 긴급조치 4호의 제4항과 제8항은 발포 이전의 행위를 사후에 범죄시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소급입법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조항이다.⁶

2)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는 중앙정보부법에 의해서 국내 보안정보 및 국외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군사기밀 누설, 암호 부정사용죄와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정보부 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 감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정은 박정희 정권을 보위하는 친위 부대로서 국내 사찰과 정치 공작을 일삼았으며, 고문을 통해서 인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인혁

5 소위 정찰제 재판을 말한다.

6 한승헌, 민청학련 사건 당시 여정남 등에 대한 「상고이유서」 참조.

당 재건위 사건 등 수많은 용공단체 사건을 조작했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 제10항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의 관할 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는 내용에 의거해서 긴급조치 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 비상군법회의의 검찰부의 수사업무를 조정, 감독했고, 비상군법회의와 대법원의 재판,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형 생활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⁷ 즉, 중정에서 긴급조치 제2호를 근거로 긴급조치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통제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박정희가 중정을 통해서 국내 정치를 관리하려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고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즉, “익명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정보업무가 활동성이 요구되는 수사업무를 동시에 맡게 될 때, 정보업무는 수사를 염두에 둔 공작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 결과 인권 침해는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비밀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포심을 내재화시켜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건들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⁸

2. 인혁당 사건에서 드러난 수사와 재판의 특징들

1) 고문에 의한 신체의 자유 억압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과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몽둥이 찢질,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 잠안재우기 등의 고문이 모든 피의자들에게 가해졌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고문은 주로 중정 6국 지하실에서 중정 6국 수사관과 경북도경 경찰들에 의해서 이뤄졌다. 수사관들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일삼

7 당시 민청학련 행동총책으로 지명됐던 이철은 중정 직원들이 재판 도중에 당시 재판관이었던 박희동 중장이나 이세호 대장에게 쪽지를 전달하면서 재판의 방향을 이끌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휴정을 하고 재판정 밖으로 끌려나갈 때 중정 6국장 이용택이 차 옆에서 중정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고 직원들은 바로 무엇인가를 배포해서 쪽지를 재판정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8 고영삼, 「국가기관의 정보수집 활동과 시민의 인권 문제」, 『21세기의 인권』, 434쪽.

왔고, 지하실, 사무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몽둥이질을 했으며, 피의자들에게 일주일 이상 잠을 안 재우기도 했다. 그 결과 하재완은 폐농양증에 걸려서 입에서 피를 토했고, 장이 항문으로 빠져나오는 병(탈항)에 걸려서 똑바로 앉거나 걷지 못했다. 박중기는 전기고문을 받는 도중 실신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에 의하면 이수병은 “소나 돼지도 그렇게 맞으면 죽을 정도로” 몽둥이질을 당했다. 당시 피의자들 대부분은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하면서 반실신되는 경험을 했고, 몽둥이질의 후유증으로 부축을 받으면서 겨우 계단을 올라 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 안에서도 철장을 붙잡고 몸을 뒤척이면서 겨우 교도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고문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자기 결정권과 자기 처분권을 파괴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고문은 개인의 의지를 억누르고, 타인의 강요에 순응하도록 만들며,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신체의 활동을 박탈한다. 또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몇 십 년간, 또는 평생 동안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박탈되거나 생명이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물론 당시의 헌법(유신 헌법) 제10조 제1항(“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심문 처벌 강제 노역과 보안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과 제2항(“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이 존재해 법적으로는 고문이 금지됐다. 그러나 고문은 기본적인 수사 기법인양 관습처럼 수사기관에서 자행됐다. 그리고 검찰청 물고문 사건은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2) 허위 자백에 의한 범죄 내용 조작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조직 구성에 대한 증거는 일체 없다. 또한 피의자들이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했다는 증거 역시 전혀 없다. 유일한 증거 자료는 하재완과 송상진이 복한 방송을 청취하고 기록한 노트였는데, 이것은 이 노트를 작성한 사람과 돌려 읽은 일부 사람들이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러나

증거가 없지만, 중정 6국에서는 고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혁당 재건위를 비롯해서 이와 같은 목적의 단체들을 만들 수 있었고, 이 사건 피해자 임구호의 경우처럼 생전 처음 보는 하재완의 노트 내용을 암기시킨 다음에 하재완의 집에서 노트를 보고 나서 인혁당 재건위에 포섭됐다고 조작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 정만진의 경우처럼 시간과 공간, 증인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⁹ 그리고 재판정에서는 이처럼 증거가 없는 허위 자백을 옮겨 적은 자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인정해 피고인 24명에게 모두 징역 15년 이상, 사형까지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것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¹⁰

3) 억압적인 분위기에서의 검찰관 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검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강요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검찰관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의 수사 역시 중정에 의해서 조정, 감독될 수밖에 없는 법적, 정치적 현실 속에서 피의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협박과 고문이었다. 당시에는 중정

9 정만진은 1974년 4월 5일에 대구 소계 동네 복덕방에서 이웃인 최○○, 나○○, 이○○와 모여 있는 자리에서 유신 헌법을 비방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자백할 것을 강요받았고, 이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 또한 최○○, 나○○, 이○○ 모두 참고인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했고, 그 결과 모두 허위로 위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4월 5일 복덕방에서 정만진이 자신 앞에서 유신을 비방했다”고 증언한 최○○는 4월 5일에 제사 때문에 서울에 있었다고 한다. 당시 중정의 한 수사관은 자신이 중정 6국 보일러실에서 정만진으로 하여금 복덕방에서 유신을 비방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자백하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혹한 고문이 가해졌고, 중정 수사팀장이 대구 쪽 참고인도 어떻게 하든 시인을 하게 만들어서 관련 서류를 올려 보내라고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시인했다.

10 물론 유신 헌법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있다. 그러나 유신 헌법은 앞에서 보았듯이 성립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 측면에서의 평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 사항으로서, 현행 헌법은 물론이며 3공화국 헌법, 5공화국 헌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이 조항에 기초하는 것이 타당하다.

6국에 위치한 검찰관 조사 장소에 고문 수사관이 입회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 피의자들이 진실을 호소하면 입회한 수사관이 보일러실로 끌고 가면서 협박을 하는 방식, 수사관이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조사를 하다가 피의자가 무인찍기를 거부하면 다시 중정 수사관에게 보내서 고문 등의 방법으로 고문고분하게 만들어 다시 검찰관이 조사하는 방식, 끝까지 무인찍기를 거부하면 수사관이 손을 잡고 강제로 무인을 찍게 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또한 검찰관 조사 역시 중정의 조정과 감독 아래 이뤄졌는데, 이것은 “검찰관은 한 마디로 바지저고리여서 권한이 없고, 중정에서 만들어진 피의자 신문조서를 거의 복사하다시피 조서를 꾸몄다”는 당시 검찰관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행위들은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여부를 엄격한 증거에 의거해 판단해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의 기본 임무를 정면으로 짓밟은 불법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 자체는 중정의 감독을 받아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원인 무효 행위에 해당한다.¹¹ 또한 협박과 고문을 통해서 작성된 검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서명날인만 있으면 재판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당시에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과 고문 주장은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기각됐는데, 이것은 지금도 여전하다. 즉, 피고인이 강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을 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피고인측이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검찰관 조서의 임의성이 부인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¹²

4) 불법 재판

당시의 위법적인 재판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

11 한편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검찰부에서는 5월 27일에 (중정의 조정 아래 작성된) 서울시경의 의견서를 토대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기소를 한 뒤에,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범죄 내용인 인혁당 재건위의 구성과 가입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사를 했다. 즉, 검찰부에서 독자적인 증거 수집과 조사, 증거 판단을 하지 않고 경찰의 내용, 즉 중정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기소를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12 강금실, 「피고인의 인권과 형사재판의 근본 문제」, 『21세기의 인권』, 285쪽.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결정적인 증언을 해 줄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을 해도 재판부에서 받아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재판부에서는 오직 검찰관의 증인 신청만 인정했고, 변호인의 증인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둘째, 임의성이 성립하지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에 의해서 유죄를 확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임의성 입증에 대해서 심리를 미진하게 하고, 임의성 없는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재판정에서 수사관, 검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와 자필 진술서는 고문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것임을 폭로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조사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검찰관이 제시한 각종 조서와 진술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했다.

셋째,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이 없는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는데, 이는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한 행위이다.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들도 모두 검찰관이 제시한 조서와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런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각했다.

넷째,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부정됐다.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고문당한 사실을 증언하면 이를 재판부나 검찰관이 제지했고 때론 협박을 하기도 했다. 특히 임구호는 최후 진술에서 거센 항의를 한 결과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 검찰관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피고인을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 또는 유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인식하는 검찰부와 재판부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판은 사실상의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사건의 피고인 가족도 한 명으로 방청이 제한됐다. 그리고 재판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역할을 수행할 기자들도 방청이 제한되어 결국 신문과 방송에 보도조차 되지 못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5) 공문서 조작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와 공판조서가 조작됐다. 이렇게 조작된 공문서는 결국 24명의 피의자들을 유죄로 몰아붙이는 주요 근거가 됐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의 생명권과 인권이 침해당했다. 일반적으로 공문서, 특히 법원의 공판조서는 그 자체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나 이 경우처럼 증거 능력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 구치소와 서울 중부서에서 작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검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거의 대부분이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검찰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사 장소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당시 피의자들과 수사관들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조사가 중정 6국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피의자들과 검찰관, 경찰, 중정 수사팀장 등에 의하면 검찰관 조사 역시 대부분 중정 6국에서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관 입회 아래 피의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의 일시도 허위로 기재됐다. 당시 수사 기록에는 인혁당 재건위 결성과 가입이라는 중요한 혐의를 입증하는 경찰관 조서와 경찰관 입회 아래의 진술서가 모두 5월 23일과 5월 25일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피의자들은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 인혁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일시와 조사한 경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 조사 일시는 모두 기소일인 5월 27일 이후였다. 그런데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당시 수사 기록과 비교해 보면, 그 내용과 수사관의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피고인들의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높다.¹³ 또한 이 사건의 수사관들은 당시 중정에서 조서의 작성 일자를 두서없이 기록했으며, 기록처럼 하루에 4명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의자들의 기억이 확실한 것이면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¹³ 또한 5월 23일부터 5월 25일 사이의 조서는 모두 진술조서이다. 기소일인 5월 27일이 지나서 피고인들(기소가 됐으므로 피의자가 아니다)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은 목격자의 진술과 기록의 모순성에 의해서 입증된다. 공판조서에는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비밀 공산 지하조직을 결성해서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해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들이 모두 시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형 선고가 예상되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험 법칙상 맞지 않으며, 당시 공판 과정을 목격한 교도관, 변호인, 방청 가족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입증됐다. 당시 재판정을 지켜본 변호사, 교도관, 피고인의 가족들은 공판 기록에 나타난 중요한 허위 기재 사실이 크게 두 가지라고 주장한다. 첫째는 피고인이 부인한 혐의 사실을 정반대로 기록하는 것이고, 둘째는 피고인의 불법적인 고문 수사에 항의하는 발언을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증언 이외에도 공판조서에 나타난 기록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어 허위로 작성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이수병의 공판조서에는 ‘우홍선 등과 같이 회합을 해 남한의 공산화 혁명을 위한 혁신세력의 규합, 대정부 투쟁의 합의 등을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수병이 시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불과 몇 쪽 뒤에서는 “공산 폭력행위를 계획 논의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수병이 부인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또한 공판조서에는 재판정에서 도예종이 자신

을 전 인민혁명당 위원장이라고 진술했으며, 우홍선 등 다른 피고인들 역시 스스로를 또는 다른 피고인들을 전 인민혁명당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나 도예중, 우홍선 등은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인혁당의 결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재판정에서 이처럼 말했다는 것은 경험 법칙상 맞지 않으며, 가족들 역시 누구도 전 인혁당원, 전 인혁당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6) 변호인 접견의 제한

피의자들은 비록 구속됐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구속이라는 극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소송의 동등한 주체로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구속 이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에는 중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설령 변호인 접견권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들이 중정에 들어가서 신문 장소에 입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들은 중정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접견한 일이 없으며, 가족들은 이들이 연행된 후 상당 기일이 지나도록 연행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거나 어느 곳으로 연행됐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그 결과 유신 헌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고,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협박에 대한 변호인의 감시가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서울 구치소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이 입회해 접견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당시 행형법 18조 제3항에는 “수형자의 접견과 서신 수발은 교도관의 참여 또는 검열을 요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피고인 접견시 교도관이 입회해 청취하고 기록하는 것은 변호인의 자유로운 조력에 의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 조약과 헌법재

14 박승욱, 「수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세기의 인권』, 240쪽, 244쪽.

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부정됐다.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에서는 “간섭 또는 검열 없이 그리고 완전한 비밀 가운데 변호사의 방문을 받고 교통하고 상담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 및 편의가 주어질 권리, 법집행 관리들의 시야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으나 청취의 범위 내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적시하고 있으며, 1992년 1월 28일 91헌마111 결정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의 비밀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되어 있다.¹⁴

7) 가족과 친지의 면회 금지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가족과 친지들의 접견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 결과 사형수들은 중정으로 은밀히 연행된 이후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한 상태로 처형됐고, 다른 피고인들도 역시 4월 9일이 되어야 면회가 가능했다.

가족과 친지의 면회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자체 판단이나 검사의 요청으로 금지할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징벌의 일환으로 구치소장이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구치소 생활이 대단히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징벌의 차원에서 면회가 금지됐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중정이나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서 면회 금지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전자의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 역시 피고인들이 도주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건이 조작됐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가족과 친지에 대한 면회 금지는 단지 공안사범들에 대한 관례적인 적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면회를 금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가족과 친지에 대한 면회 금지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8) 전격적인 사형 집행

이 사건의 사형수 8명은 모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다음 날인 4월 9일 새벽에 서울 구치소에서 처형됐다. 사형수들은 보통 형이 확정되어도 최소한 몇 개월, 길

면 7년까지의 시한이 지난 다음에 형이 집행되거나 감형조치 되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전격적인 사형 집행은 재심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위법적이다.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재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순간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오판에 의한 사법 살인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생명권은 인간의 권리 중에서 가장 소중한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생명권이 ‘최고의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최고의 권리’가 사형 제도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다면, 사형 제도에 의해서 단 하나의 무고한 생명이라도 희생될 수 있다면, 사형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9) 유언 조작과 시신 탈취

이 사건의 사형수들이 사형장에서 최후로 진술한 유언 역시 조작된 것이 확실하다. 당시 사형 장면을 목격한 교도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도예종은 “통일을 못 보고 죽는 것이 억울하다”는 한 마디 유언만 남겼다. 그러나 사형 집행 명령부에는 도예종이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8명 모두 한 명의 예외 없이 “종교 의식을 거부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역시 사형 장면을 목격한 교도관들에 의하면 사형수들이 “종교 의식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1975년 4월 11일자 『한국일보』에는 사형수 대부분이 종교 의식을 거부했고, 도예종은 ‘조국의 공산주의 적화통일을 기원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이들은 죽음초차 유신정권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다.

사형 집행을 하면 24시간 안에 친족이나 친지에게 연락을 해서 이들에게 사체를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홍선과 이수병의 사체를 제외한 6명의 사체는 가족들의 의사대로 인수할 수 없었다. 송상진의 사체는 가족에게 인계됐다가 경찰에게 탈취되어서 강제로 화장된 다음에 재차 가족에게 인계됐고, 여정남 등의 사체는 대구로 바로 운반된 다음에 가족에게 인계됐다.

10) 감사와 미행, 사회적 따돌림

1974년 4월, 5월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24명의 민주 인사들이 구속된 이후 1982년에 석방되기까지 이들의 부모, 형제, 부인들에게는 경찰들의 철저한 감사와 미행이 뒤따랐다. 특히 대구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경우 부인들이 시장이나 목욕탕을 가도 경찰들이 따라왔고, 석방운동을 하러 상경할 때에도 경찰들이 직접 서울까지 따라왔다. 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거나 박정희가 대구에 오는 경우에는 집 앞에 임시 초소를 설치하고 경찰들이 그 안에 상주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친척들은 가족들과 왕래를 끊었다. 가족들은 이웃들에게 ‘빨갱이 가족’으로, 어린 아들, 딸들은 학교 친구와 선생님에게 ‘빨갱이의 아들, 딸’이라고 따돌림을 당했다. 또한 이 사건의 가족들이 이사를 가면 경찰들이 이웃에 ‘빨갱이가 이사를 왔다’고 소문을 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인혁당 재건위 사건 가족들은 사회적 연좌제라는 덫 속에서 기본적 인권인 사생활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갔다.

3. 글을 마치며 - 인권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과제

이상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조작되는 전체 과정과 위법적인 행위들 속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인권 침해 양상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인권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과제들을 확인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겠다.

첫째, 인간의 권리 확보를 위한 대중운동이 활성화되고, 여기에 기반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변화를 강제할 물질적 운동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안보 이데올로기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 인혁당 사건이나 기타 간첩단 사건은 안보와 반공이라는 한국 사회의 지상명제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인권이 유린됐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현재도 여전히 『조선일보』로 대변되는 사회 기득권층 사이에서는 안보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다시금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인혁당 사건과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특별 재심,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올바른 과거청산 없이 희망찬 미래의 건설은 없다.

넷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간첩단 사건과 공안 사건을 조작하는 주요 법적 근거가 됐으며, 제7조 찬양 고무에 관한 조항은 정적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유감없이 활용됐다. 그러나 현재는 남북한의 화해, 협력과 평화 균축이 점차 대세를 이루고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들의 경우 형법으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인권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다섯째,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국내 정보수집 권한이 제한되어야 한다.

여섯째, 자백 위주의 수사에서 증거 위주의 수사로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과학 수사를 강화해 증거 위주의 수사 관행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재판정에서도 자백으로만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거 조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피고인을 재판의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고 피고인이 검찰 측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의 관행들을 바꾸어야 한다. 수사 과정부터 피의자들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각종 수사 기록의 열람이 가능해져야 한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서 수사기관, 재판정, 구치소에서 피의자, 피고인, 재소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조현조 dlworld1@hanmail.net | 현재 의문사건상규명위원회 조사관.